고소장

고소인

성명: r

주민등록번호: r

주소: r

전화번호: r

피고소인

성명: r

주소: r

전화번호: r

고소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사실

-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r 관계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한 r r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 2.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r"라고 하며, 고소인을 공연히 희롱하였는데, 이는 당시 서울 여의도 소재 IFC몰 식당가에 있던 r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 3.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모욕적인 언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계속된 모욕 행위로 고소인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 4.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모욕 행위가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이유

1. 공연성에 관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역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이 발생한 r 당시 r 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r의 사람이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r" 라는 언행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에 대한 모욕을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주변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만한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만큼,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모욕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r" 라는 언행은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일회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로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바,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특정성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으로서,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 표현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모욕을 행한 바에 비추어 피고소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이 사건 모욕의 대상이 고소인으로 특정됨이 너무나 인정될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모욕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추후 추가될 예정)

r

위 고소인 r (서명 또는 인)

r 귀중